

도보

제2658호 2011년 03월 18일(금)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충청북도규칙 제2698호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3
- 충청북도규칙 제2699호 충청북도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4
- 충청북도규칙 제2700호 충청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24

고 시

- 충청북도고시 제2011-69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32

공 고

- 충청북도공고 제2011-18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33
- 충청북도공고 제2011-187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34
- 충청북도공고 제2011-188호 2011도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위탁기관 모집공고·35
- 충청북도공고 제2011-196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43
- 충청북도공고 제2011-197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등록 공고·····44
- 충청북도공고 제2011-201호 사단법인 원각불교문화원 법인허가 공고·····45

☞ 뒤쪽 이어서

회 람									
--------	--	--	--	--	--	--	--	--	--

시 군 행정

△ 고 시

충주시 고시 제2011-44호 충주 도시관리계획(대영베이스골프장)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승인고시	·46
충주시 고시 제2011-45호 충주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13호,소로3·224호)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47
청원군 고시 제2011-30호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고시	·50
청원군 고시 제2011-31호 청원 강내 군관리계획(대학)세부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3
청원군 고시 제2011-32호 청원 군관리계획(하수도,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55
보은군 고시 제2011-17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57

△ 공 고

충주시 공고 제2011-297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60
제천시 공고 제2011-373호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65
청원군 공고 제2011-237호 토지보상계획 공고	·66
증평군 공고 제2011-130호 군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68

기 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11-2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실효 고시	·6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51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7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1-35호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73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경영공시 제2011-10호 2010년도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경영공시	·75

규 칙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18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규칙 제2698호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협의회 위원 임기의 특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의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 폐지사유

-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2010.12.31 전부개정)에 따라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에 관한 필요사항이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존속 필요성이 상실됨

□ 폐지내용

-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시행규칙을 폐지

충청북도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18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규칙 제2699호

충청북도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충청북도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심사권”을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 질문·검사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①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구분하여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2. 2개 이상 시군과 연관된 자
3.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

- 4.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 5. 지방세 신고가 불성실한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의뢰한 조사대상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기간”을 “시간”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6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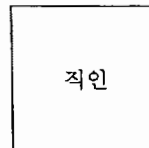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 치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 거부사유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회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①

충청북도지사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 치 사 유						
예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충청북도지사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재증)

<p>○ 법 인 명 : (인)</p> <p>○ 대 표 자 :</p> <p>○ 법인소재지 :</p> <p>○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p> <p>○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p> <p>○ 제출일자: 년 월 일</p>	<p>법인유형</p> <p>제조업 ()</p> <p>건설업 ()</p> <p>판매업 ()</p> <p>운송업 ()</p> <p>기 타 ()</p>	<p>주 요 목적사업</p>
--	--	---------------------

충청북도지사 귀하

① (297mm×210mm)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충청북도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 문의사항 전화 :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 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서식목차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 서식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7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 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납부액**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 등

법인세법98조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출 지방소득세** : $\text{합계(과세표준액)} \times \text{지방세법 제89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사군	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	--	-----	----	-----	----	---	------	--

구분 월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 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기타	법인세 법 제98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② (297mm×210mm)

※ 서식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충청북도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 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 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충청북도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m²)

사업 장명	소재지	사 업 개 시 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 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③ (㉤)	납부 일자	차인세 액 (㉥-㉤)
				기숙 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					

③ (297mm×210mm)

※ 서식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충청북도 소재 사업장) 작성

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
재 (수시 고용인 포함)

※ 월 통상인원(종업원수) = 상시종업원수(관리,생산임시) + 수시종업원수(당월의 일
별 고용인원수 합계 / 당월 일수)

-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
(0.5/100)을 곱하여 산출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충청북도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계														
② 비과세소득	연장 차량														
	㉡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임시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연월별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

□ 개정사유

- 지방세기본법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이 신설 됨에 따라 법률 위임근거가 미약한 「세무조사대상자선정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종전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개정내용

- 지방세 분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별지 서식 정비
 -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제136조) 조문정리 (안 제1조, 제2조)
- 지방세기본법 제1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1조에서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규칙상 법률 위임근거가 미약한 「세무조사대상자선정위원회」 폐지 (안 제32조~35조)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출생연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작성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사업명 :

평가위원	평 점	최상위 또는 최하위
○○○		
○○○		
○○○		
○○○		
○○○		
○○○		
○○○		
평균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성 자 : 직 책 _____ 성 명 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 성 명 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 성 명 _____ (인)

□ 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도 및 도의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공정·투명한 집행 및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충청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제정내용

- 가. 위원회 구성(제3조)
 - 위 원 장 :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
 - 구성인원 : 위원장포함 7명이상 10명이내
- 위원의 자격요건(제3조)
 - 국가 또는 다른자치단체 공무원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동등이상 경력자) 등

충청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18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규칙 제2700호

충청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충청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충청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 마.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 그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의 선정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를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예비위원은 위원회구성인원 3배수 이상으로 하되,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⑤ 평가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할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

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정성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출생연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작성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사업명 :

평가위원	평 점	최상위 또는 최하위
○○○		
○○○		
○○○		
○○○		
○○○		
○○○		
○○○		
평균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성 자 : 직 책 _____ 성 명 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 성 명 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 성 명 _____ (인)

□ 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도 및 도의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공정·투명한 집행 및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충청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제정내용

- 가. 위원회 구성(제3조)
 - 위 원 장 :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
 - 구성인원 : 위원장포함 7명이상 10명이내
- 위원의 자격요건(제3조)
 - 국가 또는 다른자치단체 공무원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동등이상 경력자) 등

고 시

충청북도 고시 제2011-69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다음의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충 청 북 도 지 사

등록번호	등록 년월일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산림사업 의 종류
충청북도 2011-4	2011 3.11.	벽계임업(주)	오준환	충북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138-6 2층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공 고

충청북도 공고 제2011-18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

“154kV 북충주 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 전원 개발촉집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및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1-35호(‘11.3.7)호)되었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충 청 북 도 지 사

제1조 (열람기간 및 장소)

- ① 열람기간 : 공고한 날부터 30일간
- ② 열람장소 : 충주시청(경제과, 전화번호 : 043-850-6043)

제2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 ① 명 칭 : 154kV 북충주 변전소 건설사업
- ②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 ③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32-1
 - 나. 면 적 : 13,341㎡ (변전소부지 : 13,232, 도로 : 109)

충청북도 공고 제2011-187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충청북도지사

도로의 종류	국가지원지방도	노선명	82호(화성~평창선)
공사의 종류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사명 : 탄금호 조정경기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국지도 82호선 교차로 설치공사		
구 간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일원 (가감속차로 L = 400m, 좌회전차로 L=230m)		
공사시행장소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349-5번지 ~ 562-9번지		
착공 예정일	2011. 4.	준공예정일	2012. 12.

이 유 : 탄금호조정경기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국지도 82호선 연결 교차로 설치

충청북도 공고 제2011-188호

2011도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위탁기관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의거 2011년도 충청도내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을 위탁 실시할 보수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충청북도지사

1. 보수교육 개요

- 가. 위탁교육명 :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 나. 위탁기간 : 2011. 5. 1. ~ 2011. 12. 31
- 다. 교육대상 : 충청북도 소재 보육시설종사자(시설장 및 보육교사)
- 라. 교육예정인원 : 1,228명
- 마. 교육과정 : 8개 과정(일반직무교육 3, 특별직무 3, 승급교육 2)
- 바. 교육시간 : 40시간(직무교육과정), 80시간(승급교육과정)
- 사. 교육과정별 보수교육 대상자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 훈련기간	비고
직무교육	일반 직무 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시설장 신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자	40시간	시설장 첫해
	시설장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특별 직무 교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과 정 명		교 육 대 상	교 육 훈 련 기간	비 고
승 급 교 육	2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 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아. 교육비용 및 부담주체

- 직무교육(일반, 특별) : 1인당 6만원(40시간 기준)
- 승급교육(1급, 2급) : 1인당 12만원(80시간 기준)
- 부담주체 : 국비 50%, 도비 50%

자. 교육실시 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함

차. 보수교육의 내용 :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P200~202) 참고

2. 응모자격 :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다음요건 중 1개이상 충족하는 기관·단체

가.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에 한함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 시설(보육교사교육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3. 제출서류

가.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1부(서식 1)

나.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기준

다. 교육과정운영계획서(서식 2) - **별첨하여 제출**

※ 표지는 붙임 2호 서식으로 하고 다음 내용이 포함되게 작성

- (1) 교육기관 현황(설립현황, 시설현황, 교육생 교통편 등 포함)
- (2) 교육개요(교육목표, 교육운영세칙 등)
- (3) 교육과정 및 반 편성 계획
- (4) 교육과정별 교과목, 교육내용, 강의시간, 강사진
- (5) 교재개발 및 활용계획
- (6) 교육생 평가 및 출석관리계획
- (7) 교육과정별 수요자 만족도 평가방법
- (8) 교육비 산출(예산) 내역

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서식 3 요약본 포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함)

마. 추가 첨부서류 각 1부.

- (1) 정관, 등기부등본, 출연금에 관한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함)
- (2) 건축물관리대장(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
-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4) 시설 및 설비목록

4. 위탁기간 및 조건

가. 위탁계약기간은 2011. 5. 1. ~ 2011. 12. 31까지로 한다.

나. 수탁자는 보육관련 법규와 위탁자의 행정지시에 따라 운영한다.

5. 위탁의 취소

- 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나.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 다.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 라.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6.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 가. 접수기간 : 2011. 4. 4(월)~ 4. 6(수)(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나. 접수장소 : 충청북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육지원팀(본관1층)
-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위탁기관 선정방법 : 응모자격 서류 검토 후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최종심의 결정

8.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보 및 충청북도홈페이지 (<http://www.cb21.net>)게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육지원팀으로 문의
(☎ 043-220-3083)

9.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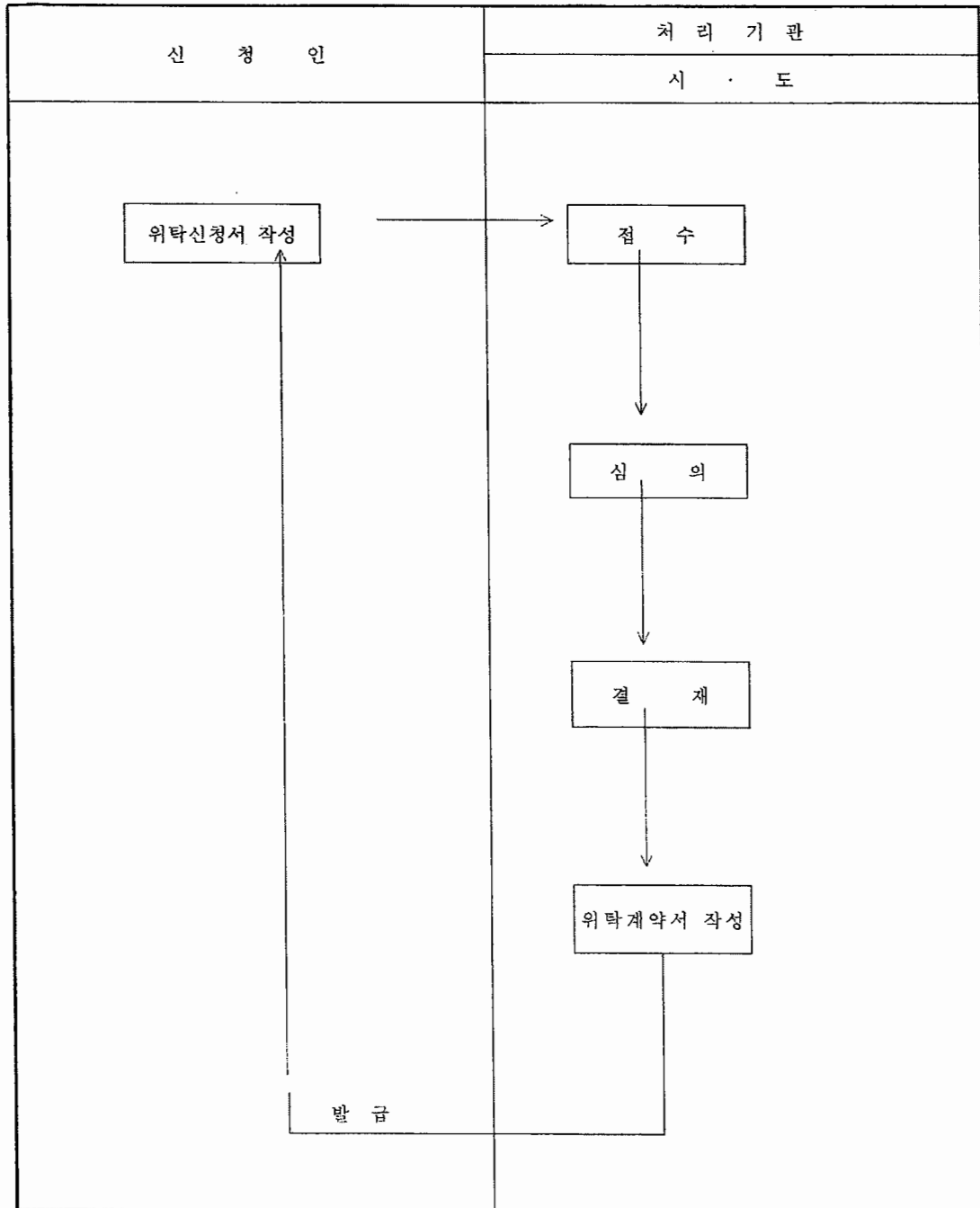
- 가.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 나. 교육과정운영계획서(표지양식)
- 다. 교육실시요원 이력요약서

서식 1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22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 주 소		(전화 :)			
교육 기관 개요	④ 명 칭					
	⑤ 소 재 지		(전화 :)			
	⑥ 기관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1기당교육 예상 인원		명	
⑨ 시설 설비	강 의 실	㎡	실가설습실	㎡	도 서 실	㎡
	교수연구실	㎡	사 무 실	㎡	부설보육시설	㎡
	기 타 시 설	㎡	건 물	㎡	대 지	㎡
⑩교수 요원	전 임	명		외 래	명	
⑪교육 과정	교육 과정 명			교과목		시간
<p>「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충청북도지사 귀하</p>						
※ 구비서류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서식 2

2011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011년 4월 일

교육기관명

서식 3

교육실시요원 이력요약서(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 관련)

구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논문 및 경력사항	경력기간 (개월)	비고

※ 보수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자를 기재하되, 구분란에 교수(전임, 외래), 행정요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계약 후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충청북도 공고 제2011-196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충청북도지사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정보통신공사업 (제430102호)	삼주전기(주) 대표 박태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525-4번지 2동	'11. 3. 14	신규등록

충청북도 공고 제2011-197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2011년 3월 18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	등록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제2000-1-충청북도-7호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 복문로2가 16-4	전혜정	2000년도 5월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권익신장 및 교양사업 소비자보호 및 상담사업 건강가정 및 청소년 육성·선도사업 환경친화사업 등 	043-255-7222	여성정책과 변경등록(대표자)
제2000-1-충청북도-19호	제천YWCA	충청북도제천시 명동 9-8	김숙자	2000년도 5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독교 운동, 회원 운동, 사회 운동 자원봉사활동, 보건 및 체육 활동, 국제 활동 여성지위향상 사업 어린이 청소년대학생 및 성인교육 	043-645-2580	여성정책과 변경등록(대표자)
제2007-충북-9호	충북여성문인협회	충청북도청주, 상당 용암동 새영첼시빌 108-1501	오계자	2007년도 3월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가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회지발행과 출판사업 발표회, 강연회 강좌 개최 출판회 등 각종 기념회 등 	043-291-1015	여성정책과 변경등록(대표자)
제2006-38	한국부인회청원군지부	충청북도청주, 상당 지북동 144-1	박금순	2000년도 5월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지위향상을 위한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교양사업 	043-865-4596	여성정책과 변경등록(대표자)
제2000-충청북도-17호	충북여성민우회	충청북도청주, 흥덕 가경동 1756	김미숙	2000년도 5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사업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관련 상담 및 제반사업 여성인권회방위 및 복지증진 사업 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제반 사업 가족화해기법문화정착을 위한 사업 친환경 공동체 만들기 사업 	043-252-8124	여성정책과 변경등록(소재지)
제2000-충청북도-17호	대한적십자사봉사회보은군협의회	충청북도보은군 보은읍 85-14	김순자	2011년도 3월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대비와 재해구호에 관한 사업 현황 및 보건 안전에 관한 사업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청소년보호와 선도에 관한사업 등 	043-543-1995	자치행정과 신규등록

충청북도 공고 제2011-201호

사단법인 원각불교문화원 법인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충청북도지사

1. 허가번호 : 제2011 - 3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원각불교문화원
3.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4. 대표자 : 김 영 춘
5. 설립목적 : 인재양성, 학술단체 지원 등을 통한 불교문화 후세 전승
6. 설립허가일 : 2011년 3월 10일

시군행정

충주시 고시 제2011-44호

충주 도시관리계획(대영베이스골프장)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승인 고시

충주시 이류면 장성리 산18-1번지 일원에 골프장 확장 계획에 따른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충청북도 고시 제2011 - 61호 (2011. 03. 11)로 결정(변경) 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충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조서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431,062	-	1,431,062	100.00	
관 리 지 역	소 계	1,052,625	378,437	1,431,062	100.00	
	계획관리지역	999,268	378,437	1,377,705	96.27	
	생산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53,357	-	53,357	3.73	
농 립 지 역		378,437	△ 378,437	-	-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에 관한 사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이류1	체육 시설	골프장	충주시 이류면 장성리 산18-1번지 일원	999,268	431,794	1,431,062	충청북도고시 제2005-93호 (2005.08.05)	

2.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승인도 : 충주시청(지역개발과)에 비치

3. 관계도서를 충주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충주시 고시 제2011-45호

충주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13호, 소로3-224호)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충주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13호, 소로3-224호)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과 충청북도사무 의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9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충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주시 문화동 307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13호, 소로3-224호)사업
- 명 칭 : 문화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규 모 : L=129.2m, B=8.0 ~ 10.0m
 - 소로 2-213호 : L= 32m, B=10.0m
 - 소로 3-224호 : L=97.2m, B=8.0 ~ 10.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충주시장(도로과장)
- 주 소 :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7. 기타 관련서류는 충주시청 지역개발과(850-6114) 및 도로과(850-6211)에 비치하고 있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관제인 조서

【문화16통 도시계획도포개발공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충주시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문화	3899	구	1,121	301		농림부(국)				소로 3-224
2	"	3888	도	3,805	1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
3	"	3887-10	대	98	70		충주시				"
4	"	3887-9	대	212	37		충주시				"
5	"	3887-8	대	426	70		충주시				"
6	"	3073-1	대	8	8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451 충주시 문화동 1088-2 충주시 노은면 기신리 306 충주시 문화동 809-10	임계만 황영순 황순화 고주원				"
7	"	3074-1	도	3	3		충주시				"
8	"	3074-2	대	5	5	충주시 문화동 3074	서삼차				"
9	"	3025	도	588	187		(국)건설부				"
10	"	3887-7	대	152	37		충주시				"
11	"	3075-2	대	4	4	충주시 담가면 월상리 338-1 충주시 문화동 330-1충주맨션102 충주시 문화동 330-1충주맨션201호 충주시 문화동 1448 한강맨션306호 충주시 문화동 330-1 충주시 문화동 1844 충주시 북반동 265-24 충주시 문화동 330-1충주맨션402호	배은주 최경석 김연희 김재봉 이재성 정하식 이경훈 신승화				"
			소계	6,422	73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관제인 조서

[문화16동 도시계획도로건설공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관제인			비고
	충주시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12	문화	3887	대	234	30	충주시				소로 3-224	
13	"	3890	도	744	19	충주시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14	"	332	도	1,039	276	충주시				소로 2-213	
15	"	3890	도	744	13	충주시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3184	도	437	23	(국)건설부				"	
	"	3899	구	1,121	41	농림부(국)				"	
			소계	4,319	402						
			합계	10,741	1,138						

청원군 고시 제2011-3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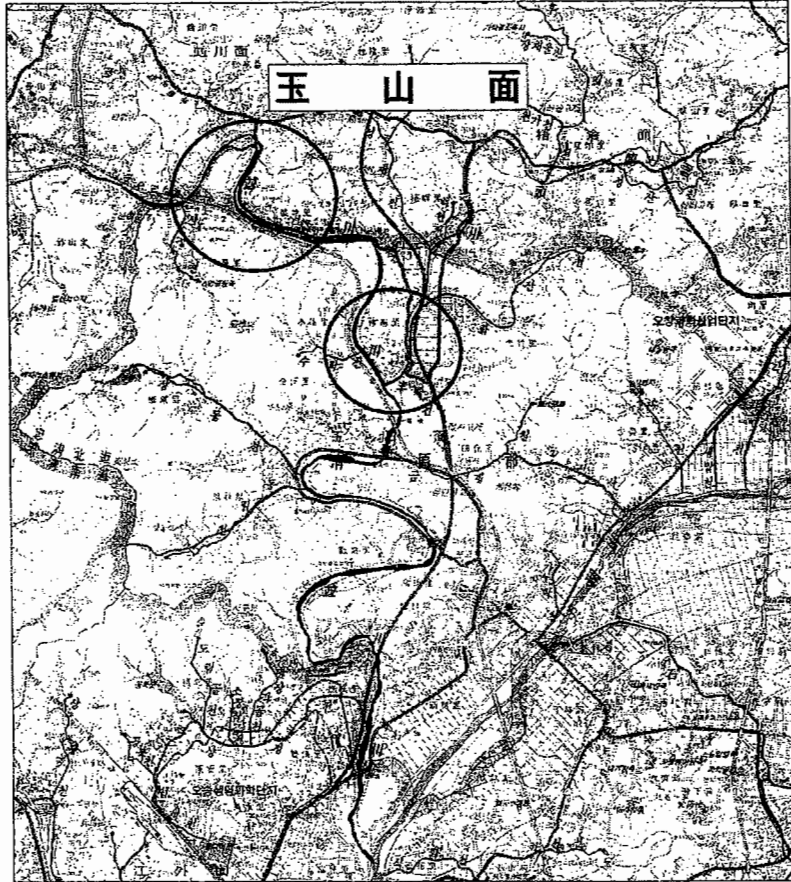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고시

병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청 원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병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 홍수피해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보호
 - 나. 개 요 : 토 공 - 흙깎기 : 47,000m³, 사토: 3,092m³
호 안 공 - 식생호안블록(1000X1000X200,L=1,180m, A=16,309m²)
석보 A=272.0 m²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가.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63-1 ~ 349-4 일원
 - 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재리 산 932-2 ~ 764-1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 : 청원군수
 - 나.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울곡로 27(북문로 1가 171-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1년 3월 ~ 2011년 12월 (9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불임과 같음
7. 실시설계도서 : 재난안전과 하천담당부서 비치
8. 사업비 및 조달 계획 : 국비, 도비 전액 확보시행
9. 공사에정표
 - 2011년 3월 ~ 2011년 12월 (9개월)
8.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우리 군 관리
7. 폐천부지 발생예상 면적 : 없음.

위 치 도



小河川 現況

渠名	河道長	流域	面積	延長
				km
A. 本				54.842
B. 支				
1. 1	1.1	1.1	1.1	3.15
1. 2	1.2	1.2	1.2	3.947
1. 3	1.3	1.3	1.3	2.15
1. 4	1.4	1.4	1.4	2.77
1. 5	1.5	1.5	1.5	1.62
1. 6	1.6	1.6	1.6	1.1
1. 7	1.7	1.7	1.7	1.25
1. 8	1.8	1.8	1.8	1.69
1. 9	1.9	1.9	1.9	3.259
1. 10	1.10	1.10	1.10	0.52
1. 11	1.11	1.11	1.11	2.929
1. 12	1.12	1.12	1.12	2.74

S=1:50,000

凡 例	
國家河川	
地方國河川	
地方支國河川	
小河川	

용 지 조 서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시, 군, 읍, 면, 동, 리)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권입면적 (㎡)	면일구분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내용	
합 계 : 4 필 지				9,069	3,373								
1	오창읍 상재리	산92-4	임	3,982	1,192	부분권입	창주시 신명구 용암동 2105 함우리타운 103동 1508호	손인숙					
2	오창읍 상재리	573-1	전	863	291	부분권입	오창읍 상재리 492-1	박종만					
3	오창읍 상재리	572-3	전	53	53	완전권입	오창읍 상재리 559-3	홍한섭					
4	오창읍 상재리	571-4	전	275	275	완전권입	창주시 남주동 52	김남여					
5	옥산면 장남리	339-5	제	197	161	부분권입	옥산면 장남리 186-2	이범균					
6	옥산면 장남리	336-4	제	793	257	부분권입	옥산면 장남리 140	이원식					
7	옥산면 장남리	347-4	답	60	36	부분권입	옥산면 장남리 186	노장철					
8	옥산면 장남리	347-3	답	53	53	완전권입	옥산면 장남리 186	노장철					
9	옥산면 장남리	348-4	임	13	4	부분권입	옥산면 호죽리 641	최학성					
10	옥산면 장남리	348-3	답	132	32	부분권입	옥산면 장남리 265	이권희					
11	옥산면 장남리	349-2	답	407	40	부분권입	옥산면 장남리 140	강만경외19인					
12	옥산면 장남리	347-6	임	1,104	581	부분권입	옥산면 장남리 186-1	장남리수인수 리계					
13	옥산면 장남리	349-4	임	1,137	398	부분권입	경성부 죽창정 2장목 110	심근형					

청원군 고시 제2011-31호

청원 강내 군관리계획(대학) 세부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7번지 일원의 한국교원대학교내에 유아교육복지 연구원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대학) 세부시설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청 원 군 수

1. 군계획시설(대학) 세부시설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세 부 시설명	건축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비율(%)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교육 연구 시설	1	교양학관	2,188.04	2,188.04	6,294.63	6,294.63				
	2	기숙사신뢰관	715.53	715.53	2,973.09	2,973.09				
	3	기숙사사랑관	740.00	740.00	3,099.20	3,099.20				
	4	중앙동력기계실	865.10	865.10	865.10	865.10				
	5	인문과학관	2,220.60	2,220.60	9,072.10	9,072.10				
	6	기숙사사임당관	708.76	708.76	3,639.20	3,639.20				
	7	기숙사인내관	672.40	672.40	3,471.80	3,471.80				
	8	교수아파트가동	680.40	680.40	2,041.20	2,041.20				
	9	음악관	1,255.00	1,255.00	3,338.80	3,338.80				
	10	기숙사울곡관	694.36	694.36	3,471.80	3,471.80				
	11	기숙사청람관	708.76	708.76	3,668.00	3,668.00				
	12	미술관	1,538.00	1,538.00	3,935.02	3,935.02				
	13	교수아파트나동	333.00	333.00	1,071.00	1,071.00				
	14	학군단	781.56	781.56	1,552.32	1,552.32				
	15	교수아파트다동	333.00	333.00	999.00	999.00				
	16	학생회관	2,378.07	2,378.07	5,515.39	5,515.39				
	17	도서관	2,502.62	2,502.62	8,963.77	8,963.77				
	18	체육관	3,177.55	3,177.55	4,682.39	4,682.39				
	19	자연과학관	2,454.15	2,454.15	9,351.08	9,351.08				
	20	대학본부	1,323.05	1,323.05	5,106.58	5,106.58				
	21	기숙사다락관	707.71	707.71	3,627.25	3,627.25				
	22	대학원	1,484.83	1,484.83	4,787.89	4,787.89				
	23	교수아파트라동	262.80	262.80	788.40	788.40				
	24	교수회관	691.14	691.14	1,413.48	1,413.48				
	25	천문관측소	135.00	135.00	309.37	309.37				
	26	응용과학관	1,175.98	1,175.98	4,619.68	4,619.68				
	27	교원문화관	2,497.01	2,497.01	3,687.74	3,687.74				
	28	대학원연수원기숙사	836.03	836.03	3,431.24	3,431.24				
	29	교수아파트마동	144.36	144.36	577.44	577.44				
	30	지진관측소	83.97	83.97	83.97	83.97				
	31	외국어연수관	1,594.39	1,594.39	6,126.85	6,126.85				

구분	도면 표시	세 부 시설명	건축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비율(%)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교육 연구 시설	32	교원연수동나동기숙사	1,002.46	1,002.46	2,948.22	2,948.22	49,572.71	51,157.85	6.17	6.37
	33	교원연수원외래숙소	166.44	166.44	499.32	499.32				
	34	교원연수관	1,426.99	1,426.99	3,845.37	3,845.37				
	35	기숙사복지관	1,173.30	1,173.30	3,045.51	3,045.51				
	37	자연하수처리장관리실	62.00	62.00	62.00	62.00				
	38	교원연수원가동기숙사	880.56	880.56	3,562.80	3,562.80				
	39	동아리실	278.35	278.35	536.65	536.65				
	40	음악연주실	556.67	556.67	552.38	552.38				
	41	종합교육관	1,195.98	1,195.98	7,768.70	7,768.70				
	42	교육박물관	2,544.44	2,544.44	5,131.72	5,131.72				
	43	교사교육센터	1,346.26	1,346.26	5,885.02	5,885.02				
	44	교육정책대학원 및 연수원기숙사	1,535.89	1,535.89	10,601.57	10,601.57				
	45	종합실험실습교육관	1,618.31	1,618.31	6,445.27	6,445.27				
	46	유아교육복지연구원	-	1,637.20	-	3,197.43				
	계		49,670.82	51,308.02	163,694.00	166,891.43				
부 대 시 설	1	기숙사관리동	2,255.34	2,255.34	3,105.05	3,105.05	3,437.38	3,437.38	0.43	0.43
	2	총장공관	331.55	331.55	409.06	409.06				
	3	총장공관 수위실	59.50	59.50	59.50	59.50				
	4	온실	170.40	170.40	170.40	170.40				
	5	정문수위실	30.00	30.00	30.00	30.00				
	6	기숙사 경비실	18.35	18.35	18.35	18.35				
	7	소각장	248.00	248.00	248.00	248.00				
	8	교수테니스장관리실	30.24	30.24	30.24	30.24				
	9	교수아파트 관리실	54.00	54.00	54.00	54.00				
	계		3,407.38	3,407.38	4,334.60	4,334.60				
공 공 시 설		주차장					13,844.41	14,192.00	1.72	1.76
		도로					64,509.72	68,227.73	8.03	8.49
		운동장					50,492.70	50,492.70	6.28	6.28
		계					128,847.03	132,912.43	16.03	16.53
		녹지 및 휴게시설					621,848.08	616,197.34	77.37	76.67
		총 계	803,705.00						100.00	100.00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1/3000) : 청원군청(도시과)에 비치(도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043-251-359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청원군 고시 제2011-32호

청원 군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청원군 옥산면 신촌리 292번지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 계획(하수도, 도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18일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하수도 결정조서

○ 하수도종말처리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	하수종말 처리장	옥산면 신촌리 292번지 일원	-	증) 20,012.7	20,012.7	-	-

- 결정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9	하수종말 처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면적 : 20,0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산 하수처리구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할당량 저감 대책을 이행하고자 하수도 신설

○ 간선하수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10	간선 하수도	옥산면 가락리 290-1번지	옥산면 신촌리 293-1번지	지방도 508호선	5.2	2,544.8	-	-

- 결정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0	간선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연장 : 5.2km 면적 : 2,54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산 하수처리구역내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키고자 하수관거 신설

나. 도로 결정조서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38	10	국지 도로	337	옥산면 신촌리 253-3번지	옥산면 신촌리 293-3번지	일반 도로	-	-	

- 결정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1-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신설 - 폭원 : 10m - 연장 : 337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종말처리장 신설로 인한 진출입로 노선신설

2.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 상기 결정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지도 : 도보게재 생략 (청원군 도시과에 비치)

보은군 고시 제2011-17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공사를 시행코자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8일
보 은 군 수

1. 사업 시행지 위치 :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하천정비사업
 - 명칭 : 향건천 하도개선사업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하천명	등급	공사명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비고
향건천	지방 하천	향건천 하도개선사업	수한면 후평리	하천정비 1.027km	2011.3.~ 2011.1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성명 : 보은군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이해관계인 조서 : 따로 붙임
6. 기타 서류는 보은군 건설방재과 하천시설계(☎043-540-34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토지 및 지장물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고
	면	리			품명	단위	수량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수한	후평	44-3	답	토지	m ²	38	보은읍 삼산리 171-13	최석규외2인			
2	수한	후평	86-1	천	토지	m ²	990	보은읍 중동	정봉수			미등기
3	수한	후평	86-2	천	토지	m ²	958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4	수한	후평	86-19	답	토지	m ²	579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5	수한	후평	86-5	천	토지	m ²	2,467		김치선			미등기
6	수한	후평	86-6	천	토지	m ²	3,114	내북면 봉평리	방윤혁			미등기
7	수한	후평	86-10	답	토지	m ²	362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8	수한	후평	86-11	제	토지	m ²	399	보은읍 중동	정봉수			미등기
9	수한	후평	86-12	임	토지	m ²	75	보은읍 중동	정봉수			미등기
10	수한	후평	86-13	제	토지	m ²	494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11	수한	후평	86-14	천	토지	m ²	95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12	수한	후평	86-15	제	토지	m ²	77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13	수한	후평	86-16	제	토지	m ²	1,615		김치선			미등기
14	수한	후평	103-5	답	토지	m ²	24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15	수한	후평	103-6	답	토지	m ²	72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16	수한	후평	128-1	답	토지	m ²	368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17	수한	후평	130-2	답	토지	m ²	366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18	수한	후평	131-1	답	토지	m ²	144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19	수한	후평	132	답	토지	m ²	565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20	수한	후평	132-4	답	토지	m ²	1,434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21	수한	후평	139-1	답	토지	m ²	42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22	수한	후평	166	답	토지	m ²	80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23	수한	후평	167	답	토지	m ²	134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24	수한	후평	129-1	답	토지	m ²	325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25	수한	후평	132-5	답	토지	m ²	278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26	수한	후평	132-6	답	토지	m ²	35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27	수한	후평	132-7	답	토지	m ²	62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28	수한	후평	123-4	답	토지	m ²	91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수			
29	수한	후평	137-1	답	토지	m ²	449	후평리 107-3	고한두			
30	수한	후평	140-3	답	토지	m ²	232	후평리 48-2	고선두	의왕시 포일동	농촌공사	근저당
31	수한	후평	141-3	과	토지	m ²	606	후평리 78-1	우연식			
32	수한	후평	141-4	답	토지	m ²	9	후평리 78-1	우연제			
33	수한	후평	149-4	답	토지	m ²	285	후평리 80	김동만			
34	수한	후평	152-5	목	토지	m ²	133	후평리 301	최창웅			
35	수한	후평	152-7	목	토지	m ²	123	후평리 301	최창웅			
36	수한	후평	152-6	답	토지	m ²	66	후평리 301	최창웅			
37	수한	후평	154	답	토지	m ²	626	후평리 107-3	고찬기			보은군 입류
38	수한	후평	154-1	답	토지	m ²	778	후평리 107	고찬선			
39	수한	후평	156	답	토지	m ²	246	후평리 159	김소남			
40	수한	후평	157	답	토지	m ²	1,377	후평리 261-1	전복남			
41	수한	후평	158	답	토지	m ²	426	청주 북대 5-18	백구현			
42	수한	후평	159-3	답	토지	m ²	1,911	청주 북대 5-18	백구현			
43	수한	후평	159-4	답	토지	m ²	18	청주 북대 5-18	백구현			
44	수한	후평	160	답	토지	m ²	2,115	울산 울진군 범서읍 구영리 762-2	심현숙외2인			
45	수한	후평	161-2	답	토지	m ²	1,896	후평리 79	이기원			
46	수한	후평	5-8	답	토지	m ²	607	삼산리 143	김종애			
47	수한	후평	152-1	답	토지	m ²	80	후평리 301	최창웅			
48	수한	후평	161	답	토지	m ²	100	후평리 79	이기원			
49	수한	후평	153	답	토지	m ²	48	후평리 93	김구환	수한면	수한농협	근저당
50	수한	후평	153-1	답	토지	m ²	10	후평리 104	김정옥			
51	수한	후평	162	전	토지	m ²	77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0 분평주공@007동	주일석			
52	수한	후평	162-1	전	토지	m ²	29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0 분평주공@007동	주일석	소유권이전	국토부	대유자
53	수한	후평	162-2	답	토지	m ²	5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28 신농주공@005동006	홍향숙	수한면	수한농협	근저당
54	수한	후평	183-1	답	토지	m ²	54	후평리 213-3	김창환	수한면	수한농협	근저당
55	수한	후평	184	답	토지	m ²	12	후평리 207	정다니엘	보은 성주리	보은농협	근저당
56	수한	후평	280	답	토지	m ²	26	후평리 126-4	황중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고
	면	리			종 명	단위	수량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수한	후평	161	답	비닐하우스	㎡	73	후평리 79	이기원			
2	수한	후평	280	답	포도나무 (지대장주만수묘)	주	8	후평리 48-2	고선두			
3	수한	후평	141-3	과	비닐하우스	㎡	544	후평리 78-1	우연식			
					비닐하우스	㎡	173					
					간이비닐하우스	㎡	45					
					흙관	m	50					
					호두나무(13년생)	주	2					
					대추나무(5년생)	주	76					
					두릅나무	주	298					
					밤나무(11년생)	주	3					
					박태기나무(9년생)	주	1					
					자귀나무(2년생)	주	1					
					무궁화(9년생)	주	1					
					은행나무(18년생)	주	3					
					은행나무	주	4					
					오가피(7)	주	25					
					복숭아나무	주	1					
					대추나무(묘목)	주	23					
					관정	식	1					
					관수시설(양수기및 파이프관)	식	1					
4	수한	후평	154-1	답	포도나무	주	400	후평리 107	고찬선			
5	수한	후평	152-7	목	축사(본체,슬레이트 지붕)	㎡	178	후평리 301	최창웅			
					축사(부속건물,칼라 강판지붕)	㎡	120					
					축사(부속건물,FRP 지붕)	㎡	144					
					컨테이너	㎡	8.64					
					울타리(강관파이프 Φ48.6mm)	m	53					
					가축(소)	두	20					
					두충나무	주	2					
					엄나무	주	2					
					오가피	주	2					
6	수한	후평	140-3	답	대추나무	주	37	후평리 301	최창웅			
					두릅나무	주	110					
7	수한	후평	152-5	목	대추나무	주	3	후평리 301	최창웅			
					두릅나무	주	6					
8	수한	후평	152-6	답	비닐하우스	㎡	87	후평리 301	최창웅			
9	수한	후평	153	답	향나무	주	1	후평리 93	김구환			
					소나무	주	1					
10	수한	후평	162-1	전	오가피	주	10	청주시흥덕구분 평동1200 분평주공③307	주일석			
11	수한	후평	162	전	단풍나무등	주	9	청주시흥덕구분 평동1200 분평주공③307	주일석			
12	수한	후평	159-4	답	감나무	주	3	청주 북대 5-18	백구현			
					대추나무	주	3					
					머루나무	주	1					
					두릅나무	주	85					

충주시 공고 제2011-297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충 주 시 장

1.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m)	주 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양성	리도	저전선	202	충주시 양성면 중전리 13-4	충주시 양성면 중전리 344	1,140	-	10.0	8.0 (6.5)	양성 체리파크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지정

2. 노선지정도 : 게재생략

□ 위치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1)

사업명 : 양성 체리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 유 자 주 소	비고
1	증전리	산65-8	도	1,257	98	충청북도		
2	"	산65-4	임	76,904	39	박성두	충주시 양성면 증전리14	
3	"	780	구	12,820	171	국(농림수산부)		
4	"	64-3	답	1,364	2	임부연	충주시 양성면 증전리 440-2	
5	"	780-3	구	5,598	2,249	국(농림수산부)		
6	"	775	도	6,905	5,185	국(농림수산부)		
7	"	328	천	324	107	홍선주	충주시 양성면 증전리439	
8	"	342-3	천	579	107	이은서	충주시 양성면 증전리406	
9	"	342-1	천	1,349	946	김영일	충주시 양성면 증전리408	
10	"	343-1	천	1,726	386	김기범	서울 송파구 거여동 220-52	
11	"	16-8	도	330	64	충청북도		
12	"	780-4	도	171	171	국(농림수산부)		
13	"	14-5	도	398	88	국(건설부)		
14	"	13-4	도	410	97	충청북도		
15	"	774-4	천	6,961	50	국(건설부)		
16	"	65-3	답	1,335	157	정추월외4인	용인시 동천동 859 동천마을 현대1차홈타운 107-2001	
17	"	65-2	답	1,949	172	국(건설부)		
18	"	65-1	답	2,196	180	국(건설부)		
19	"	65	답	2,309	165	이덕호	충주시 양성면 강천리 98	
20	"	54-3	답	2,524	164	이덕호	충주시 양성면 강천리 98	
21	"	54-2	답	831	51	이덕호	충주시 양성면 강천리 98	
22	"	54-1	답	870	51	이덕호	충주시 양성면 강천리 98	
23	"	54	답	1,777	1	국(건설부)		
24	"	774-7	천	375	207	국(건설부)		
25	"	52-3	답	2,099	139	이용선	충주시 양성면 강천리 98	
26	"	52-2	답	1,144	65	김종득	충주시 양성면 강천리 98	
27	"	52-1	답	753	45	국(건설부)		
28	"	52	답	2,595	141	조건학	충주시 양성면 증전리 406	
29	"	37-3	답	1,752	97	김경자	충주시 양성면 증전리 403	
30	"	37-2	답	1,696	81	정문호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5-50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2)

사업명 : 양성 체리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 유 자 주 소	비고
31	중천리	37-1	답	1,452	75	김종득	충주시 양성면 강천리 98	
32	"	37	답	2,344	121	이병로	충주시 양성면 중천리 434	
33	"	30-2	답	3,756	187	이남영	충주시 양성면 중천리 434	
34	"	30-1	답	1,599	75	이남영	충주시 양성면 중천리 434	
35	"	30	답	2,018	110	이남영	충주시 양성면 중천리 434	
36	"	29-2	답	3,078	168	박광배	충주시 양성면 중천리 434	
37	"	29-1	답	1,918	149	박광배	충주시 양성면 중천리 434	
38	"	29	답	383	39	국(건설부)		
39	"	28-1	답	1,644	178	정태근	충주시 양성면 중천리408	
40	"	28	답	1,082	184	정태근	충주시 양성면 중천리408	
41	"	12-1	답	1,818	489	이은영	충북 음성군 갑곡면오궁리82	
42	"	330	구	90	31	국(농림수산부)		
43	"	12	답	1,888	407	국(건설부)		
44	"	780-2	구	1,032	941	국(농림수산부)		
45	"	9-2	답	2,300	408	이택주	충주시 양성면 강천리 98	
46	"	9-1	답	2,053	421	김옥남	충주시 양성면 중천리	
47	"	9	답	2,007	577	국(건설부)		
48	"	780-1	구	52	18	국(농림수산부)		
49	"	329	전	353	281	차홍운	충주시 양성면 중천리	
50	"	774	천	71,742	1,842	국(건설부)		
51	"	327	천	883	386	홍선주	충주시 양성면 중천리	
52	"	785	도	2,350	764	국(건설부)		
53	"	344	천	245	69	김명오	충주시 양성면 중천리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1)

사업명 : 양성 체리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물건소재지		물건명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리	번지					주소	성명
A	중전	780-3	① 삼각표지판	양철	EA	1		충주시
			② 알림판	양철	EA	1		충주시
			③ 버스승강장	PE,철재	㎡	4.2		충주시
			④ 마을비	석재	EA	1		저전청송회
B	중전	780	① 간판	양철	EA	1		저전건강원
			① 간판	양철	EA	1		오감산대불사
			① 간판	양철	EA	1		저전장로교회
			④ 교통표지판	양철	EA	1		충주시
C	중전	780	① 사과나무	5년생	주	1	미상	
D	중전	30-2	① 미상나무		주	21	이남영	
E	중전	29-2	① 미상나무 (대)		주	13	박광배	
			① 미상나무 (소)		주	5	박광배	
F	중전	29-2	① 미상나무		주	15	박광배	
G	중전	29-2	① 복숭아	3년생	주	39	홍선주	
			② 사과나무	3년생	주	31	홍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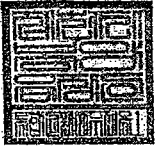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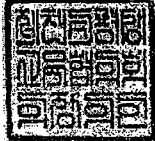
제천시 공고 제2011-373호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제천시공인조례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을 등록·폐기하고 동 조례 제 10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제 천 시 장

1.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1. 3. 14.
2. 등록공인 인영 : 2개

공인명칭	공인인영	서체 및 규격	등록사유
제천시봉양읍장인(통합민원사무전용1) - 세로		한글전서체 2.4cm × 2.4cm 정방형	인증기 노후에 따른 재등록
제천시평생교육협의회장인		한글전서체 2.4cm × 2.4cm 정방형	조례에 따른 협의회 명칭변경으로 인한 재등록

3. 폐기공인 인영 : 2개

공인명칭	공인인영	서체 및 규격	폐기사유
제천시봉양읍장인(통합민원사무전용1) - 세로		한글전서체 2.4cm × 2.4cm 정방형	인증기 노후에 따른 재등록
제천시평생학습협의회장인		한글전서체 2.4cm × 2.4cm 정방형	조례에 따른 협의회 명칭변경으로 인한 재등록

청원군 공고 제2011-237호

토 지 보 상 계 획 공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병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청 원 군 수

1. 사업현황

- 공 사 명 : 병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
- 위 치 :
 - 가.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363-1 ~ 349-4 일원
 - 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재리 산 932-2 ~ 764-1일원
- 사 업 량 : 토 공 - 흙막기 : 47,000㎡, 사토: 3,092㎡
 호 안 공 - 식생호안블록(1000X1000X200,L=1,180m, A=16,309㎡)
 석보 A=272.0 ㎡
- 공사기간 : 2011년 3월 ~ 2011년 12월 (9개월)
- 사업시행자 : 청원군수

2. 토지조서 : 아래 목록과 같음(붙임참조)

3. 물건조서 : 아래 토지상의 모든 물건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가. 기 간 : 2011. 3. 18.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장 소 : 충북 청원군 재난안전과 하천담당 (043-251-3663)

5. 보상시기 : 2011. 4. 11.(예정) 이후

6. 보상방법 : 본 공사에 편입되는 면적의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

7. 기 타 : 보상계획은 추진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용지조서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편입구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내용		
합계 : 4 필지				9,069	3,373									
1	오창읍 성제리	신92-4	임	3,982	1,192	부분편입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5 한우리타운 103동 1508호	손인숙						
2	오창읍 성제리	573-1	전	863	291	부분편입	오창읍 성제리 492-1	박종만						
3	오창읍 성제리	572-3	전	53	53	완전편입	오창읍 성제리 559-3	홍한섭						
4	오창읍 성제리	571-4	전	275	275	완전편입	청주시 남주동 52	김남여						
5	옥산면 장남리	339-5	제	197	161	부분편입	옥산면 장남리 186-2	이복균						
6	옥산면 장남리	336-4	제	793	257	부분편입	옥산면 장남리 140	이원식						
7	옥산면 장남리	347-4	답	60	36	부분편입	옥산면 장남리 186	노정철						
8	옥산면 장남리	347-3	답	53	53	완전편입	옥산면 장남리 186	노정철						
9	옥산면 정남리	348-4	임	13	4	부분편입	옥산면 호죽리 641	최학성						
10	옥산면 정남리	348-3	답	132	32	부분편입	옥산면 장남리 265	이관희						
11	옥산면 정남리	349-2	답	407	40	부분편입	옥산면 장남리 140	강만경외19인						
12	옥산면 정남리	347-6	임	1,104	581	부분편입	옥산면 장남리 186-1	장남리수안수 리계						
13	옥산면 정남리	349-4	임	1,137	398	부분편입	경상부 죽창정 2장동 110	심근형						

증평군 공고 제2011-130호

군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증평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증 평 군 수

1. 건 명 :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2. 사업시행지 :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239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문화시설
 - 명 칭 : 증평 문화회관 개·보수공사
4. 사업의 규모
 - 규 모 : A=9,709m²
5. 사업시행자
 - 주 소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번지(창동리 100번지)
 - 성 명 : 증평군수
6. 사업기간
 - 착수일 : 2010년 8월 6일
 - 준공일 : 2010년 12월 19일
7. 기타 : 관계서류는 증평군청 도시교통과(☎043-835-3923) 및 문화체육과(☎043-835-4113)에 비치함.

기 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고시 2011-2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실효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아래와 같이 실효되었음을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실효 내역 및 사유

유치원명	유치원소재지	실효사유	비고
성가정유치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172-11번지	유치원 폐지 인가 2010. 3. 1.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실효 범위

정화구역명	범 위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사방 50미터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사방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3. 기타사항

관련자료는 청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043-299-30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51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8호('07.08.03), 충청북도보 제2470호 및 고시 제2008-83호(2008.05.23), 충청북도보 제2511호 및 고시 제2009-40호(2009.02.06), 충청북도보 제2548호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수계 소옥지구 하천정비공사의 하천공사 시행(변경)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붙임 조서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금강수계 소옥지구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오동,하동,은행,동평리 지내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정리 지내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가. 목 적 : 본 공사는 금강수계 치수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써 홍수피해로부터 인가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나. 개 요 :
 - 축제 L=9,830m, 호안 L=9,830m, 교량 5개소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연월일(변경)
 - 변경 2007.08.20 ~ 2012.12.23
 - 당초 2007.08.20 ~ 2011.08.19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과 같음

7. 실시설계도서(변경 없음)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011년	장래
금강수계 소옥지구	사업량	m	9,830	4,281	3,845	1,704
하천정비공사	사업비	백만원	24,064	13,319	5,686	5,059

9. 예정공정표(변경)

- 변경 2007. 08. 20 ~ 2012.12.23

- 당초 2007. 08. 20 ~ 2011.08.19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 예상 면적(변경없음) : 없음

<붙임> 토지 세목 조서(변경,추가) 1부.끝.

■ 토지 세목 (변경)조서

당초/ 변경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종전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자	주소	권리종류	
당초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22-7	22-7	전	244	244	국토해양부					
변경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22-7	22-8	전	244	132	국토해양부					
변경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22-7	22-7	전	244	112	국토해양부					편입제외 (환매)

■ 토지 추가 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종전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자	주소	권리종류	
추가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75-2	75-2	답	373	373	임대헌	173				
추가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75-1	75-1	천	191	191	임대헌	173				
추가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116	116-3	답	5,645	31	이교부	203	군서농협 등조합	충북 옥천군 군서면 등 평리 478-3	근저당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1-35호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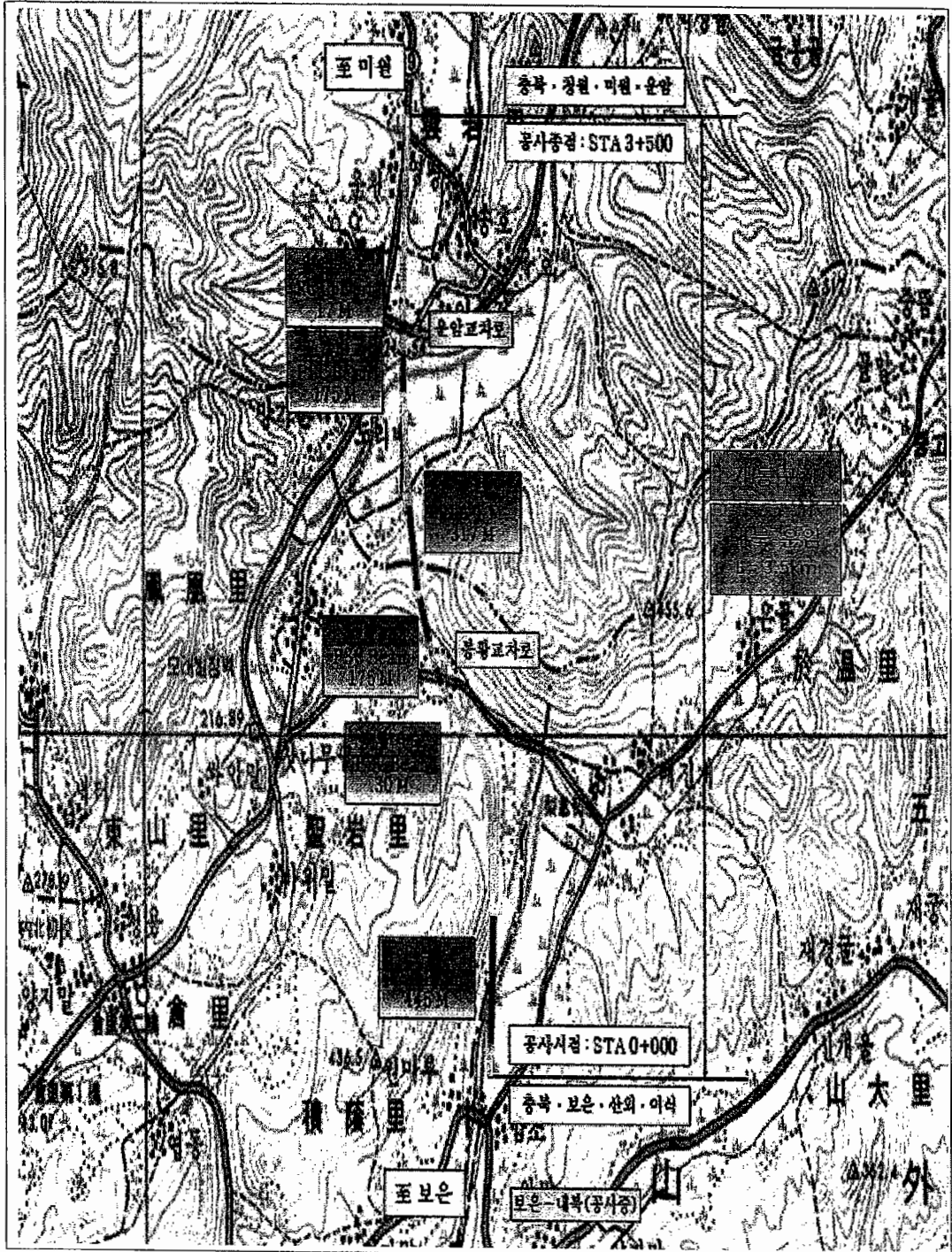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내북~운암 도로건설공사
2.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3. 노 선 명 : 국도 19 호선(남해~홍천)
4. 사용개시구간 : 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364-1(도)부터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678-1(도)까지(L=3.5km)
5. 사용폐지구간 : -
6. 중요경과지 : 보은군 내북면 적음리, 봉황리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7. 전 용 구 간 : 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364-1(도)부터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678-1(도)까지(L=3.5km)
8. 개시(폐지)일 : 2011. 03. 15.
9.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위치도(내북-운암, 국도19호선)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경영공시 제2011-10호

2010년도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경영공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업무상황 등의 공시)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결산 승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충청북도충주의료원장

- 붙 임 : 1. 대차대조표 1부
2. 손익계산서 1부
3. 기본금변동계산서 1부
4. 현금흐름표 1부. 끝.

대차대조표

제28(당)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27(전)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의료원명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단위 : 원)

과 목	제28(당)기	제27(전)기	차 감 (당기-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12,315,346,114	10,734,392,367	1,580,953,747
(1) 당 좌 자 산	11,989,269,424	10,377,063,030	1,612,206,394
1. 현금및현금등가물(주석3)	1,567,773,918	1,089,519,530	478,254,388
2. 단기금융상품(주석4)	6,600,000,000	5,183,000,000	1,417,000,000
3. 의 료 미 수 금	3,759,609,715	4,065,648,901	△306,039,186
대 손 총 당 금 (주 석 2)	△42,107,629	△34,964,581	△7,143,048
4. 기 타 미 수 금	10,507,400	23,170,100	△12,662,700
기 타 대 손 총 당 금	-	-	-
5. 선 금 금	44,750,000	-	44,750,000
6. 선 금 비 용	14,202,400	10,602,940	3,599,460
7. 선 금 제 세	34,533,620	40,086,140	△5,552,520
(2) 재 고 자 산(주석2)	326,076,690	357,329,337	△31,252,647
1. 약 품	142,899,254	134,644,698	8,254,556
2. 진 료 재 료	135,951,926	188,592,330	△52,640,404
3. 급 식 재 료	1,628,911	2,237,952	△609,041
4. 저 장 품	8,717,760	4,671,200	4,046,560
5. 의 료 부 대 물 품	36,878,839	27,183,157	9,695,682
II. 고 정 자 산	10,604,630,666	9,478,556,438	1,126,074,228
(1) 투 자 자 산	1,694,611,480	1,701,961,980	△7,350,500
1. 보 증 금	1,436,263,200	1,003,902,000	432,361,200
2. 기타투자자산(주석6)	258,348,280	698,059,980	△439,711,700
(2) 유 형 자 산(주석2,5,8)	8,910,019,186	7,776,594,458	1,133,424,728
1. 토 지 (주 석 8)	183,626,000	183,626,000	-
2. 건 물	6,109,283,685	5,980,253,685	129,03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144,462,063	△1,988,148,011	△156,314,052
3. 구 축 물	437,499,373	437,499,373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78,531,497	△266,113,026	△12,418,471
4. 기 계 장 치	101,534,700	101,534,700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89,796,727	△86,444,664	△3,352,063

과 목	제27(당)기	제26(전)기	차 감 (당기-전기)
	금 액	금 액	
5. 의 료 장 비	10,852,563,192	9,440,425,082	1,412,138,11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7,097,331,250	△6,483,873,424	△613,457,826
6. 차 량 운 반 구	357,581,724	221,863,570	135,718,15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99,923,110	△137,028,891	37,105,781
7. 공 기 구 비 품	1,693,402,198	1,328,355,493	365,046,705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121,407,039	△961,335,429	△160,071,610
8. 기 타 유 형 자 산	5,980,000	5,980,000	-
(3) 무 형 자 산	-	-	-
1. 영 업 권	-	-	-
2. 산 업 채 산 권	-	-	-
자 산 총 계	22,919,976,780	20,212,948,805	2,707,027,975
부 채			
I. 유 동 부 채	3,261,393,064	2,808,201,446	453,191,618
1. 매 입 채 무	2,350,741,590	2,184,174,330	166,567,260
2. 미 지 급 금	498,966,438	204,394,700	294,571,738
3. 예 수 금	146,839,360	155,048,432	△8,209,072
4. 미 지 급 비 용	20,691,616	22,990,684	△2,299,068
5. 미 지 급 제 세	22,154,060	19,593,300	2,560,760
6. 유 동 성 장 기 부 채	222,000,000	222,000,000	-
II. 비 유 동 부 채	4,198,842,010	4,230,957,220	△32,115,210
1. 장 기 차 입 금 (주 석 9)	1,776,000,000	1,998,000,000	△222,000,000
2. 퇴 직 금 여 충 당 금 (주 석 10)	2,424,412,410	2,234,527,620	189,884,790
국 민 연 금 전 환 금	△1,570,400	△1,570,400	-
부 채 총 계	7,460,235,074	7,039,158,666	421,076,408
자 본			
I. 자 본 (기 본 재 산)	15,156,170,642	13,146,170,642	2,010,000,000
(1) 기 본 금	15,156,170,642	13,146,170,642	2,010,000,000
1. 법 인 기 본 금 (주 석 11)	1,717,899,642	1,717,899,642	-
2. 기 타 기 본 금	13,438,271,000	11,428,271,000	2,010,000,000
II. 이 익 잉 여 금 (결 손 금)	303,571,064	27,619,497	275,951,567
1. 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303,571,064	27,619,497	275,951,567
※ 당 기 순 이 익 (손) 실 당 기 순 이 익: ₩275,951,567			
자 본 총 계	15,459,741,706	13,173,790,139	2,285,951,56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2,919,976,780	20,212,948,805	2,707,027,975

손익계산서

제28(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27(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의료원명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단위 : 원)

과 목	제28(당)기	제27(전)기	차 감 (당기-전기)
	금 액	금 액	
I. 의료수익(주석2)	23,001,035,598	19,596,626,960	3,404,408,638
1. 입원수익	16,131,379,528	13,569,591,552	2,561,787,976
2. 외래수익	5,082,868,530	4,265,516,643	817,351,887
3. 기타의료수익	1,786,787,540	1,761,518,765	25,268,775
II. 의료비용	23,969,335,758	19,996,659,767	3,972,675,991
(1) 인건비	11,220,112,545	9,630,822,536	1,589,290,009
1. 급여	10,354,470,795	8,914,423,136	1,440,047,659
2. 퇴직급여	865,641,750	716,399,400	149,242,350
(2) 재료비	7,829,864,093	6,140,118,013	1,689,746,080
1. 약품비	3,262,166,152	2,606,917,372	655,248,780
2. 진료재료비	4,025,309,430	3,002,370,401	1,022,939,029
3. 급식재료비	542,388,511	530,830,240	11,558,271
(3) 관리운영비	4,919,359,120	4,225,719,218	693,639,902
1. 복리후생비	866,821,748	761,559,140	105,262,608
2. 여비교통비	47,225,880	34,746,520	12,479,360
3. 통신비	41,022,820	37,949,310	3,073,510
4. 전기수도료	293,418,997	264,350,970	29,068,027
5. 세금과공과	70,980,496	67,987,430	2,993,066
6. 보험료	8,486,520	8,421,249	65,271
7. 환경관리비	48,623,110	40,527,420	8,095,690
8. 지급임차료	600,000	4,215,000	△3,615,000
9. 지급수수료	94,721,003	73,606,003	21,115,000
10. 수선비	133,480,387	147,866,316	△14,385,929
11. 차량유지비	21,502,996	17,015,722	4,487,274
12. 교육훈련비	22,191,260	17,375,200	4,816,060
13. 도서인쇄비	80,013,572	79,767,222	246,350
14. 접대비	25,284,300	20,788,800	4,495,500
15. 행사비	13,857,560	4,379,840	9,477,720
16. 연료비	95,361,826	89,575,130	5,786,696
17. 의료사회사업비	104,902,579	93,640,110	11,262,469
18. 소모품비	99,275,140	87,127,190	12,147,950

(단위 : 원)

과 목	제28(당기)	제27(전기)	차 감 (당기-전기)
	금 액	금 액	
19. 감 가 상 각 비	1,628,945,706	1,477,922,460	151,023,246
20. 광 고 선 전 비	5,406,786	2,930,000	2,476,786
21. 대 손 상 각 비	17,061,588	10,198,608	6,862,980
22. 피 복 침 구 비	42,030,000	45,968,800	△3,938,800
23. 외 주 용 역 비	865,146,519	747,095,978	118,050,541
24. 이 전 경 비	234,755,250	39,644,150	195,111,100
25. 잡 비	58,243,077	51,060,650	7,182,427
Ⅲ. 의 료 손 실	968,300,160	400,032,807	568,267,353
Ⅳ. 의 료 외 수 익	2,917,117,803	3,100,582,782	△183,464,979
1. 의 료 부 대 수 익	2,578,534,189	2,577,997,658	536,531
2. 이 자 수 익	246,730,038	286,399,311	△39,669,273
3.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	5,556,424	△5,556,424
4. 기 부 금 수 익	68,690,000	184,860,000	△116,170,000
5. 잡 이 익	23,163,576	45,769,389	△22,605,813
V. 의 료 외 비 용	1,672,866,076	1,541,650,709	39,260,572
1. 의 료 부 대 비 용	1,394,648,849	1,442,551,679	△47,902,830
2. 이 자 비 용	75,400,932	77,700,000	△2,299,068
3. 기 부 금	4,900,000	4,810,000	90,000
4.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91,954,795		
5. 잡 손 실	105,961,500	16,589,030	89,372,470
Ⅵ. 경 상 이 익 (손 실)	275,951,567	1,158,899,266	△882,947,699
Ⅶ. 특 별 이 익	-	-	-
Ⅷ. 특 별 손 실	-	-	-
Ⅸ.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손 실)	275,951,567	1,158,899,266	△882,947,699
X. 법 인 세 비 용			-
Ⅸ. 당 기 순 이 익 (손 실)	275,951,567	1,158,899,266	△882,947,699

기본금 변동계산서

제28(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27(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의료원명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단위 : 원)

과 목	제28(당)기	제27(전)기	차 감 (당기-전기)
	금 액	금 액	
I. 기본금	15,156,170,642	13,146,170,642	2,010,000,000
1. 법인 기본금	1,717,899,642	1,717,899,642	-
2. 기타 기본금	13,438,271,000	11,428,271,000	2,010,000,000
II. 자본잉여금	-	-	-
1. 재평가적립금	-	-	-
2. 기타자본잉여금	-	-	-
III. 처분전이익잉여금	303,571,064	27,619,497	275,951,567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7,619,497	△1,131,279,769	1,158,899,266
2. 회계변경의누적효과	-	-	-
3.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	-	-
4. 당기순이익	275,951,567	1,158,899,266	△882,947,699
IV. 이익잉여금처분액	-	-	-
1. 이익준비금	-	-	-
2. 기업합리화적립금	-	-	-
V. 차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303,571,064	27,619,497	275,951,567

현금 흐름표

제28(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27(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의료원명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단위 : 원)

과 목	제28(당)기	제27(전)기
1.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2,954,229,117	2,128,764,726
(1) 당기순이익	275,951,567	1,158,899,266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2,631,260,539	2,220,782,108
1. 감가상각비	1,628,945,706	1,477,922,460
2. 퇴직급여	865,641,750	716,399,400
3. 의료부대비용(퇴직급여)	27,656,700	16,261,640
4. 유형자산 처분손실	91,954,795	
5. 대손상각비	17,061,588	10,198,608
(3)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0	5,556,424
1. 유형자산 처분이익	0	5,556,424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47,017,011	△1,245,360,224
1. 의료미수금의감소(증가)	306,039,186	△1,684,305,380
2. 기타미수금의감소(증가)	12,662,700	△11,984,119
3. 선급금의감소(증가)	△44,750,000	
4. 선급비용의감소(증가)	△3,599,460	△2,366,139
5. 선급제세의감소(증가)	5,552,520	△1,748,060
6. 재고자산의감소(증가)	31,252,647	△129,235,435
7. 매입채무의증가(감소)	166,567,260	1,007,249,460
8. 미지급금의증가(감소)	294,571,738	37,349,380
9. 예수금의증가(감소)	△8,209,072	1,580,332
10.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2,299,068	△22,536,783
11. 미지급제세의증가(감소)	2,560,760	1,412,230
12. 대손충당금의증가(감소)	△9,918,540	
13. 퇴직급여충당부채의증가(감소)	△703,413,660	△440,775,710

과 목	제27(당)기	제27(당)기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263,974,729	△2,925,436,093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533,910,700	5,363,239,440
1. 단기금융상품감소	5,583,000,000	4,683,000,000
2. 보증금감소	467,000,000	443,784,000
3. 기타투자자산의감소	462,910,700	223,226,940
4. 유형자산의처분	21,000,000	13,228,500
(1)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10,797,885,429	8,288,675,533
1. 건물취득	129,030,000	233,515,685
2. 기계장치의취득		
3. 의료장비의취득	2,177,511,000	1,925,303,500
4. 차량운반구의취득	202,991,524	89,116,550
5. 공기구비품의취득	365,792,705	278,912,798
6. 보증금증가	899,361,200	433,000,000
7. 기타투자자산의증가	23,199,000	45,827,000
8. 단기금융상품의증가	7,000,000,000	5,283,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88,000,000	1,115,000,0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010,000,000	1,115,000,000
1. 기타기본금의증가	2,010,000,000	1,115,000,000
2. 장기차입금의증가	0	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22,000,000	0
1. 장기미지급금의 상환	0	0
2. 유동성장기부채상환	222,000,000	0
IV. 현금의증가	478,254,388	318,328,633
V. 기초의 현금	1,089,519,530	771,190,897
VI. 기말의현금	1,567,773,918	1,089,519,530